3. 2016년도 달라지는 주요 예산제도

□ 지방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 강화 및 개선

-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
 - 「지방재정법」 제5조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'성과계획서' 작성이 의무화 됨
 - * (제5조 제2항)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('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)
 - *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'1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'성과계획서'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

○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사고이월 시기 조정

 「지방재정법」개정('14.5.28)으로 '15회계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 (익년도 2.28. → 당해 회계연도 12.31)

구분	현 행	개 정
요구시기	회계연도 완료 후 <u>40일 이내</u>	회계연도 완료 후 1 <u>0일 이내</u>
확정시기	회계연도 완료 후 60일 이내	회계연도 완료 후 3 <u>0일 이내</u>

○ 예산의 첨부서류 변경사항 적용

-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 중 일부 항목이 추가되는 등 편제 개편
 - ► 재정운용상황개요서, 의무·재량지출 비중, 통합·우발 부채, 지역통합재정 통계, 회계와 기금 간 이전관련 서류 등 새로 추가

○ 「지방교부세법」개정에 따른 '소방안전교부세' 신설

-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소방안전교부세 수입

○ 예산편성 과목 설정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반영

- 기타수입(그외수입)에 '지방자치단체 금고출연 등 협력사업비' 편성 근거 신설

○ 세출예산 기능분류 기준 개선

-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출연토록 규정
- 재무활동으로 구조화되는 공사·공단에 대한 경상·자본 전출금을 실제 성질에 맞게 재무활동 설정(내부거래)에서 제외
 - ※ (현행) 재무활동(비사업) → (개정) 정책사업
 - ※ 재무활동 전출금(309) 항목의 통계목 오류 정정(309 →701 변경)
- 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2항에 따른 공립대학 운영경비 지원 과목(201-05) 신설
 - ※ 국가는 인건비, 경상적경비,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(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립대학은 국립대학 규정 준용)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무기계약직, 기간제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건비 편성기준을 제시
 - ※ (기타 무기계약근로자)
 - ▶ 현행 → 지방자치단체가 연중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
 - ► 개정 → 청소·경비 등 단순노무 관련 사무로서 250일이상 상시·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근로자

○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경비 개선

- 행정자치부 또는 시·도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미협의 기구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
- ►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1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게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편성 불가
- '16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'시· 적용군 표준표' 산정기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 - ▶ 삼척, 문경, 진도 : (가군) → (나군)